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 
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윤종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88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7.

발 의 자 : 윤종오 · 전종덕 · 손 솔  
정혜경 · 임미애 · 황운하  
한창민 · 김준형 · 김종민  
용혜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.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, 시세조작, 허위신고,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, 불법중개,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음.

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. 그러나 부동산거래를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대응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이어서 나날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조사·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「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함

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4 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88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4(부동산감독원 직원) 부동산감독원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직공무원으로서 부동산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「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, 8급·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   정      안
<p><u>&lt;신    설&gt;</u></p>	<p><u>제7조의4(부동산 감독원 직원) 부</u>  <u>동산감독원에 근무하는 4급부</u>  <u>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</u>  <u>지방직공무원으로서 부동산감</u>  <u>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</u>  <u>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</u>  <u>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</u>  <u>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</u>  <u>은 「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</u>  <u>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</u>  <u>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</u>  <u>직무를, 8급·9급의 국가공무원</u>  <u>및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</u>  <u>의 직무를 수행한다.</u></p>